

투자위험등급 4 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일: 2024년 6월 30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8월 7일
 -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hroders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동 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4.06.30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AC452]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자를 변동에 따른 위험, 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위험, 환율 변동위험, 아시아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86%	0.70%	0.97%	1.6829%	270	446	628	1,009	2,078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	없음	1.16%	1.00%	1.25%	1.9829%	203	412	627	1,076	2,322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1%	0.35%	0.63%	1.3306%	185	325	471	777	1,647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없음	0.66%	0.50%	0.85%	1.4825%	151	308	470	812	1,776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 0.83% 예상치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율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7.02	22.07.02	21.07.02	19.07.02							

수익률)			~ 24.07.01	~ 24.07.01	~ 24.07.01	~ 24.07.0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2012.9.7	<u>8.63</u>	<u>0.77</u>	<u>-3.98</u>	<u>-1.38</u>	<u>2.25</u>				
참조지수(%)	2012.9.7	<u>9.45</u>	<u>5.78</u>	<u>-2.10</u>	<u>2.73</u>	<u>4.30</u>				
수익률 변동성(%)	2012.9.7	<u>8.04</u>	<u>8.72</u>	<u>8.44</u>	<u>10.34</u>	<u>7.83</u>				
(주1) 참조 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10% (참조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24.07.0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김락	1973	책임 운용역	<u>40개</u>	<u>12,827억원</u>	<u>6.43</u>	<u>7.84</u>	<u>6.43</u>	<u>5.45</u>	<u>23년</u>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p>원본 손실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p>주식가격 변동위험</p> <p>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p> <p>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p> <p>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환매하지 않더라도 채권투자의 경우 발행자 신용상태의 변화 및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화하여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하이일드 채권 등의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하이일드 채권등을 편입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의 경우 높은 신용위험과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 부실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행자등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태 악화,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p> <p>환율 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 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p> <p>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p>
재간접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위험	<p>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환매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서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가 등록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배상액은 일괄 회수되어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오류 발생 시기와 배상 시기상의 차이, 그에 따른 적용환율의 차이, 해당 기간동안의 운용역 재량에 따른 일상적인 운용행위 결과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내·외 변수의 영향으로 피투자펀드의 기준가 오류에 따른 투자자의 실제 손실액과 배상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p>	
	국가위험	<p>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매입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환매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순자산총액:직전일의 자산총액-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과세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전환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02-6390-5000, www.schroders.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u>2024년 8월 7일</u>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A)	<p>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판매 수수료 미징구 (C)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판매 경로	온라인 (e)	<p>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오프 라인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기타	온라인 슈퍼 (S)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무권유 저비용(G)	<p>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C-P/S-P)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CP, S-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펀드 (I)	5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기관 (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5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chroders.co.kr)
- 수 시 공 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chroders.co.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C4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C45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6223
수수료선취-온라인(A-e)	AC4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C4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E62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C4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펀드(I)	AC4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AC4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AH29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3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63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CP)	E62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AU4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I4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CP)	B06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CPe)	BT81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 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 절차 및 방법: 특이 사항 없음.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C45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2. 9. 7	투자신탁 최초 설정
2013. 2. 28	투자설명서 변경(투자대상자산 변경 및 범위확대 등)
2013. 4. 8	투자설명서 변경(환매대금지급일 변경(단축) 등)
2013. 8. 14	투자설명서 변경(단순자구 수정)
2014. 2. 21	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종류S 추가)
2014. 4. 18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4. 6. 10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단독운용 체제로의 변경에 따른 해당 운용인력 기재)
2014. 7. 25	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종류C-P추가)
2015. 3. 12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종류 C-CP(퇴직연금) 추가)
2015. 7. 31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인력 변경, 종류 V(변액보험) 및 S-P 추가)
2016. 3. 3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매매평가이익 유보 적용) 등
2016. 7. 2.	펀드 위험등급 분류 체계 개편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5등급 체계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변동성 기준 6등급 체계) 및 펀드 위험등급 변경(1등급 => 4등급)
2016. 8. 5.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적용
2016. 10. 11.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종류 C-Pe 추가)
2017. 6. 23	운용전문인력 변경(장정주 => 김락)
2017. 7. 21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온라인클래스 C-CPe(퇴직연금) 추가, 종류 F&I 정의 수정 및 종류I 판매보수 인하)
2017. 10. 24.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영업일 기준 변경[한국거래소의 개장일 -> 판매 회사의 영업일])
2018. 7. 5	운용전문인력 변경(김락=>장정주)
2019. 8. 28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2020. 1. 21	종류I 정의 수정, 종류V 삭제,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 반영,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 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등
2021.02.18	위험등급 변경(4등급 => 3등급),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반영 등
2021.09.24	투자신탁 결산일 변경(9/6=>6/30) 및 회계기간 명확화 등
2022.08.26	운용전문인력 변경(장정주=>김락),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 업데이트 등
2023.07.18	위험등급 변경(3등급 => 4등급)
2023.09.08	종류A-g, C-g, S-CP(퇴직연금) 추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 변경, 일반사무관리 회사의 사명 및 주소 변경 등

2024.0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간접</u> • <u>기법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2024.03.01 시행) 반영</u> • <u>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u> • <u>기타 주석문구 및 펀드 위험(재간접투자위험) 내용 수정 등</u>
------------	---

주) 상기 연역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변경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층 (대표전화: 02-6390-5044)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4.07.01. 기준)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역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락	1973	책임 운용역	40개	12,827 억원	6.43	7.84	6.43	5.45	- 알리안츠 투신 채권운용팀 - 슈로더투신 해외운용팀 (2006.7 ~) - 운용경력 23년 -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6)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约定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3년간 변동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장정주	2012.9.7 ~ 2017.6.23
김락	2017.06.23 ~ 2018.07.05
장정주	2018.07.05 ~ 2022.08.26
김락	2022.08.26 ~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영신	^{주1)} 2012.8.1 ~ 2014.4.18
김락	2014.4.18 ~ ^{주2)} 2014.6.10

주1) (팀)공동 운용되는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공시기준 변경(기업공시서식 개정)일인 2012년8월1일자로 부책임운용인력 운용개시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14년 6월 10일자로 기존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에서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의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케이코 콘도 (Keiko Kondo)	아시아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 2017년 10월에 아시안 멀티에셋팀 부총괄(Deputy Head)로 슈로더 홍콩 지사에 합류 2021년 9월부터 아시안 멀티에셋팀 총괄책임자(Head)로 부임 아시아 지역 타겟 리턴 포트폴리오 운용, SIGMA Equity Risk Premia 리서치 그룹의 일원 2004년-2017년 UBS Asset Management에서 근무 그전까지는 일본 UFJ Tsubasa Securities 및 JP Morgan Securities에서 선임 주식 전략가로 근무 1992년 일본 Merrill Lynch에서 트레이드 지원역으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해 1994년 주식 리서치 부문으로 이동 Boston University 경영학 석사

주1)피투자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운용을 총괄하는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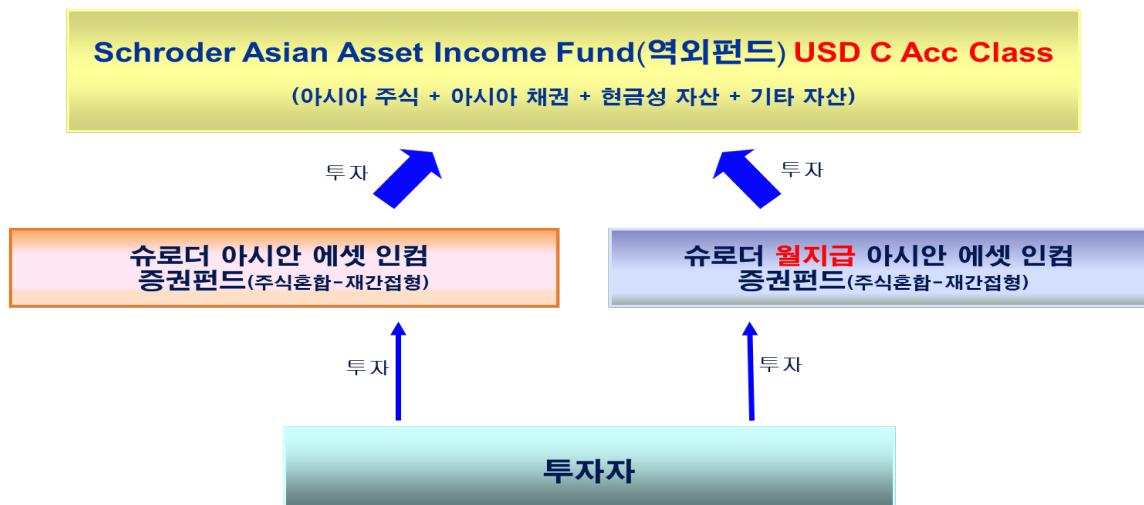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매니쉬 바샤 (Manish Bhatia)	아시아 주식팀 펀드매니저 아시아(일본제외)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홍콩 소재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펀드매니저 Unit Trust of India에서 펀드매니저 겸 애널리스트로 근무 (1994 -2000) Hamon Asset Management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 기술업종 펀드와 지역 앱솔루트 리턴 포트폴리오를 운용 (2001 –2006. 3.) Manulife Asset Management에서 아시아 태평양팀 총책(홍콩/중국 제외)으로 2008년 슈로더로 이직, 인도와 대만 펀드를 포함 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를 운용

		<p>(2006. 3. - 2008.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Regional Engineering College 공학학사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MBA
응 펑 풍 (Ng Peng Fong)	아시아 채권팀 펀드 매니저, 아시아 채권팀 총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채권 펀드 매니저, 아시아 채권팀 총책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아시아 채권 전략을 담당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2008년 2월 범아시아 금융상품을 담당하는 채권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슈로더합류 슈로더 합류 전에는 2006년 1월부터 Aberdeen Asset Management Asia 채권팀에서 채권 분석을 담당하고 아시아 채권 투자 전략 설정 및 실행을 지원하는 투자 애널리스트로 근무 공인재무분석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공인시장분석가 (Chartered Market Technician)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경영(재무)학 학사 (최우수 졸업)

주1)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상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C-P, S-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퇴직연금(C-CP, S-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펀드(I)	5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기관(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5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등

이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금리변동 및 환율변동등에 따른 외화자산 투자가치 변동등 위험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집합투자증권	100% 이하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2)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주식	40% 이하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4)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순자산 총액의 10% 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환율위험해지목적의 투자에 한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환율위험해지목적의 투자에 한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5)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4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6)신탁업자와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3) 및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 내지 3) 및 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p>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집합투자 증권 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호 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집합투자 증권 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주식투자 한도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 제18 조 제4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 투자유한책임회사 ·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2 호, 제 19 조제 7 호, 제 19 조제 9 호 내지 제 11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일 이후 외국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USD C Accumulation Class)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일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위한 목적이나, 환해지를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일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USD C Accumulation Class)는 Schroder Umbrella Fund II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서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금리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외화자산 투자가치 변동등 위험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 본 항목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들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를 지칭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기재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disclosures/other-fund-info/>)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내용중 일부가 발췌된 것이며, 최근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

명칭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 (USD C Accumulation Class) -홍콩에서 설정된 Schroder Umbrella Fund II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
투자목적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 및 배당 수익과 중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
설정일	2011년 6월 27일
규모	USD약21.33억(한화 약 2조 9,356억원), 2024년 6월말 기준
운용역	책임: 케이코 콘도(Keiko Kondo), 부책임: 매니쉬 바샤(Manish Bhatia), 응 펭 풍(Ng Peng Fong)
운용회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상기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홍콩 법에 따라 설정되어 감독기관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공모 등록되어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기재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disclosures/other-fund-info/>)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내용중 일부가 발췌된 것이며, 최근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지속적인 배당금을 제공하는 아시아(아시아 태평양 국가 포함)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부동산투자펀드(“REIT”) 포함) 및 아시아(아시아 태평양 국가 포함) 소재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투자시점 혹은 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등급이나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 기타 고정 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에 주로 (즉,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최소 70%) 투자하여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REIT는 반드시 SFC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방침이 피투자 REIT의 배당방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아시아 국가(아시아 태평양 국가 포함)나 섹터에 투자 가능한 순자산가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등급 미만(즉, BBB- /Baa3 이하 또는 Standard & Poor's, Moody's 또는 Fitch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그에 상응하는 등급, 또는 중국 본토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AA- 이하의 등급, 각기 다른 신용평가기관이 각기 다른 등급을 부여시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증권에 부여된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채택함)이거나 혹은 취득 시점에 투자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에 순자산가치의 50% 미만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상, 관련 증권이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증권의 발행인의 신용등급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증권과 관련 발행인 양자에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동 증권은 ‘등급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발행인의 레버리지, 영업이익, 자본수익, 이자보상, 영업현금흐름, 산업전망, 회사의 경쟁적 지위 및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해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정량적/정성적 펀더멘털에 기초해 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순자산가치의 20%까지 조건부 전환사채, Tier 1 보완 자본증권, Tier 2 자본증권, 후순위채(capital security bonds), 선순위 비우선 채무(non-preferred debts) 및 총손실흡수채권(total loss-absorbing capacity bonds)을 비롯한 손실흡수의 특성을 가진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 상장지

수펀드(“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물자산(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 커머더티) 및/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와 같은 기타 자산군에 대하여 순자산가치의 20%를 넘지 않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안 주식, 아시안 채권, 기타 자산군,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간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하여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가치평가, 거시경제적 수치, 유동성과 같은 경제 기초 여건 및 정량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기초하여 4단계 경제순환 주기 (회복기, 활황기, 후퇴기, 침체기)에 따라 자산배분을 달리하는 경제순환 주기에 따른 자산배분 방식을 활용합니다.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개별적인 자산군으로 취급되며 필요한 경우 불리한 시장상황에서 하락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각 자산군별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자산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주식: 30-70%

아시아 채권: 20-70%

기타 자산군: 0-20%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0-30%

상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배분 추정치는 안내 목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 경제 및 기타 상황이 변동되면 실제 배분이 상기와 다르게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산배분 방식에 추가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주식, 아시아 채권 및 기타 자산군에 투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권 종목을 선정합니다.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진정한 주주가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흐름, 지속가능하고 높은 배당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가치평가, 수요/공급 상황, 유동성과 같은 경제 기초 여건 및 기술적 견해에 기초하여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종목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금리 변화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에 기초하여 드레이션을 관리합니다. 드레이션은 금리 변화 대비 포트폴리오 가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드레이션 관리는 금리 변화가 포트폴리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은 채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투자업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드레이션을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헛징 및 투자 목적으로도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활용한 금융파생상품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활용된 금융파생상품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제한을 따릅니다.

예외적인 상황(예를 들면, 시장붕괴나 주요 위기)하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자산의 최대 30%까지 은행 예금, 예금증서, 기업어음 및 재정증권과 같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방침을 고려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합니다.

중국 A 주식은 후강통(상하이-홍콩간 주식 교차거래) 및 선강통(선전-홍콩 주식 교차거래) 제도(총칭하여, “후강통 및 선강통”이라 함)를 통하여 투자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본토 증권 연동 상품 (China market access products)과 같은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중국 A 주식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본토 증권 연동 상품 및/또는 중국 A 주식의 성과와 연계된 파생상품에 대한 동일 발행인에 대한 총위험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 이하로 제한합니다.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본토에서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고정수입 및 채무증서(“중국 본토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채권에 대한 직접 익스포저는 채권통(Bond Connect, 채권 교차거래 프로그램) 및/또는 수시로 관련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중국 본토 은행간 채권시장(“중국 은행간 채권시장(CIBM)”)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의 중국 A 주식, 중국 B 주식 및 중국 본토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익스포저의 합계는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는 위안화(RMB)로 표시된 기초 투자자산을 제한적으로 보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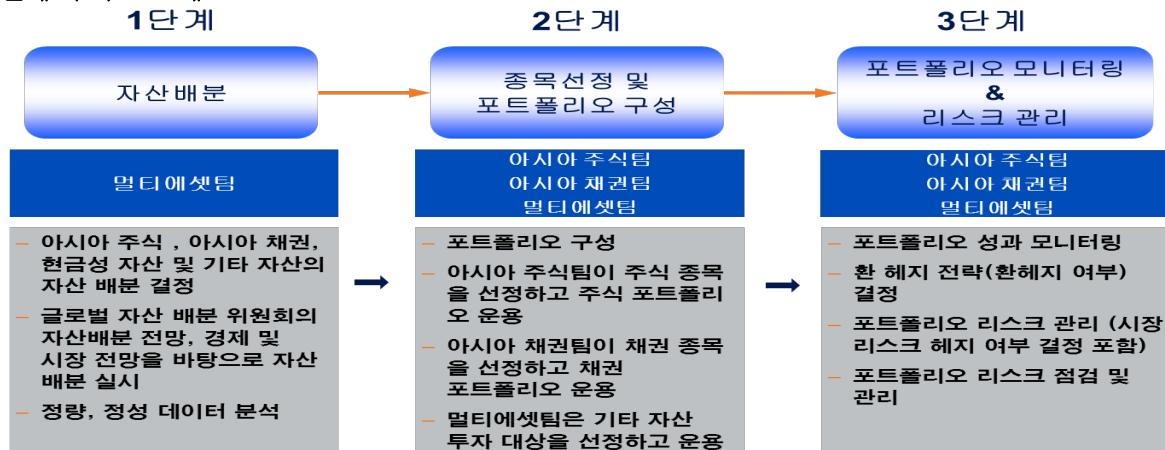
금융파생상품의 활용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순익스포저는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50%까지로 제한됩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감소시키기거나 담보 네팅(netting)을 위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보유 또는 수령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사전 동의 및 (필요한 경우) SFC의 승인을 전제로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들에게 1개월(또는 단위 신탁 및 뮤추얼 펀드에 대한 SFC 규정(“SFC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통지 기간) 전 사전 서면 통지하여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탁회사의 사전 동의 및 SFC의 승인을 얻어 본 편집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에게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합니다

*각주: 부동산투자펀드(“REIT”)의 경우 해당국에서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위 8.나.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추가 투자제한” (10) 항상 투자제한의 적용 대상입니다.

< 전체 투자 프로세스 >



* 편집자집합투자기구 자산 배분 절차

각 자산군별 예상 자산배분 내역은 상기한 바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는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의 자산배분 전망, 경제 및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아시아 주식, 채권, 대안 자산, 현금에 대한 투자비율(자산 배분)을 변경(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배분 결정은 정량, 정성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 결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 분기별 - 정보 수집 및 분석

멀티에셋팀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예상 투자수익률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리서치는 투자수익률에 따른 기초 위험요소를 나타내는 개별 리스크 프리미엄 수준별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수익률을 분석함에 있어

멀티에셋팀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 그룹은 가치평가, 경제사이클, 모멘텀에 기초한 분석 체계를 활용합니다.

(b) 월별 - 선호 자산군 결정

6명의 수석 멀티에셋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는 매월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자주)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경제전략팀의 경제순환주기 모델과 여러 리스크 프리미엄 팀이 제공한 자료를 고려합니다. 멀티에셋투자팀원으로 구성된 아시아 자산 배분 위원회는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와 병행하여 매월 회의를 가지며, 이러한 회의를 통해 특히 아시아 자산에 대한 선호 자산군을 결정하고 아시아 대표는 이를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정성 분석을 따르며,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적극적인 자산 배분 포지션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가치평가와 테마별 특이점 (thematic anomalies)을 알아낼 책임을 집니다. 투자 거래는 1명의 제안과 1명의 동의가 있어야 위원회에 부의되며 타당한 근거와 손익 한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c) 일별 -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의 지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포지션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며 기대 수익 대비 자산 비중에 따른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제한 및 차입제한

A.1.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제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부합하지 않거나 다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증권을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위해 취득하거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하여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 다음을 통해 여하한 단일기관(국채 및 기타 공채 제외)에 투자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최근 활용 가능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i)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자산;
- (ii) 금융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통한 해당 기관에 대한 익스포저; 및
- (iii)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해당 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순익스포저

보다 명확히 하자면, 본 A의 제1(a)항, 1(b)항 및 3.4(c)항에 명시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한 및 한도는 다음 금융파생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청산기관이 주요 거래상대방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및

(B) 매일 시가로 해당 금융파생상품의 포지션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고 최소 일 단위로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a)항에 의거한 요건은 본 A의 제5(e)항 및 (j)항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b) 본 A의 제1(a)항 및 3.4(c)항을 전제로 다음을 통해 동일한 그룹 내 기관들에 투자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최근 활용 가능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i) 해당 기관들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자산;
- (ii) 금융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통한 해당 기관들에 대한 익스포저; 및
- (iii)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해당 기관들에 대한 거래상대방 순익스포저

본 A의 제1(b)항 및 제1(c)항의 목적상 “동일한 그룹 내 기관들”이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 재무제표의 목적상 동일한 그룹 내에 속한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제1(b)항에 의거한 요건은 본 A의 제5(e)항 및 (j)항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c) 단일 기관 또는 동일한 그룹 내 기관들에 예치한 현금의 가치가 최근 활용 가능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다음 상황에서는 20%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i)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설립 전 및 설립 이후 최초 매입금이 완전히 투자되기 전까지 합리적인 기간 동안 보유한 현금;
- (ii)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합병 또는 종료 전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하는 것이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닐 때, 투자자산의 청산으로 얻은 현금 수익; 또는
- (iii) 단원 투자자산의 매입금으로부터 얻은 현금 수익 및 환매 대금 또는 기타 지급 채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현금 예금 약정이 투자자의 이익을 절충하지 못하는 경우.

본 제1(c)항의 목적상 “현금 예금”이란 일반적으로 즉시 상환받을 수 있거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현금 예치금을 의미하며 재산이나 용역 제공과는 무관합니다.

(d) (여타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와 합산 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여하한 보통주가 단일 기관에서 발행한 여하한 보통주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e) 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증권시장에서 가격이 표시되거나 거래되지 않는 기타 금융상품 또는 상품들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치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f)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발행 국채 및 기타 공채의 전체 가치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단,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최소 6개의 달리 발행된 국채 및 기타 공채에 그 자산 전부를 투자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자면, 국채 및 기타 공채는 동일인에 의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상환일, 이자율, 보증인의 신분 등에서 다른 조건으로 발행된 경우 달리 발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g) (i) 비적격 투자기구(“적격 투자기구”的 목록은 SFC가 수시로 지정함)이며 SFC로부터 인가 받지 않은 다른 집합투자기구(“기초 투자기구”)의 수익권 또는 주식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 가치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한 경우

(ii) 적격 투자기구(“적격 투자기구”的 목록은 SFC가 수시로 지정함)이거나 SFC의 인가를 받은 각 기초 투자기구의 수익권 또는 주식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치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30%를 초과한 경우. 단, 해당 기초 투자기구가 SFC로부터 인가 받아 해당 기초 투자기구의 상호 및 주요 투자정보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모집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때에 한합니다,

다만,

(A) SFC 규정 제7장에서 금지한 여하한 투자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여하한 기초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B) 기초 투자기구의 목적이 SFC 규정 제7장에서 금지한 여하한 투자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인 경우, 해당 투자자산은 관련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자면, 본 A의 제1(g)(i)항 및 (ii)항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그 파생상품 순익스포저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순자산가치의 100% 초과하지 않는 SFC 규정 제8장(SFC 규정 제8.7조에 따른 해지펀드의 경우는 제외)에 따라 SFC의 인가를 받은 기초 투자기구(들), 적격 투자기구(들) 및 적격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C) 기초 투자기구의 목적이 주로 기타 집합투자기구(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D) 기초 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체 또는 그 관계인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 기초 투자기구(들)에 부과되는 모든 최초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E) 집합투자업체 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나 집합투자업체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여하한 자는 기초 투자기구나 그 운용회사에 부과되는 여하한 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여하한 기초 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자면,

- (aa) SFC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A의 제1(a), (b), (d) 및 (e)항에 따른 분산 요건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한 투자자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bb)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방침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적격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는 본 A의 제1(g)(i) 및 (ii) 및 제1(g)항의 단서조항 (A)부터 (C)까지의 목적 및 그 요건을 전제로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및 취급합니다. 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적격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은 본 A의 제1(e)항을 전제로 하며, 적격 상장기구펀드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투자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cc) 상장된 REITs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 A의 제1(a), (b), 및 (d)항에 따른 요건이 적용되며 비상장되었으며 회사이거나 집합투자기구인 REITs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 A의 제1(e) 및 (g)(i)에 따른 요건이 각각 적용됩니다.
- (dd)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기반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융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은 본 A의 제1(a), (b), (c) 및 (f)항에 명시된 투자제한 또는 한도의 목적상 합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A.2.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 금지사항

SFC 규정에서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대리하여:

- (a) 건별로 해당 실물 자산의 유동성 및 요구되는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용가능한가를 고려하여 달리 SFC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b) 여하한 유형의 부동산(건물 포함) 또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여하한 옵션 또는 권리는 포함되나 부동산 회사의 주식 및 REITs에 대한 지분은 제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c) (i)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대한 부채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ii) 공매도할 증권이 공매도가 허용되는 증권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경우 및 (iii) 모든 준거 법 및 규정에 따라 공매도가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 (d) 증권의 무차입 또는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 (e) 본 A의 제1(e)항을 전제로, 여하한 자의 채무나 부채에 대해 대여, 채무 부담, 보증, 보증 서명하거나 달리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자면, 관련 요건을 준수한 역 환매조건부 거래는 본 제2(e)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f) 한도가 없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여하한 채무 부담과 관련된 여하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자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책임은 각자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산 범위까지로 제한됩니다.
- (g) 집합투자업자의 여하한 이사 또는 임원이 해당 클래스의 모든 발행된 증권의 명목가액 합산 각자 0.5%를 초과하거나 모두 합쳐 5%를 초과하여 어떠한 회사 또는 단체의 여하한 클래스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h) 해당 증권에 대한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장래 지급요청이 이루어지는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지급요청에 대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에서 전액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될 수 있고 그렇게 지불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본 A의 제3.5항 및 제3.6항의 목적상 금융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장래 채무 또는 우발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3. 금융파생상품 활용

3.1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헛징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제3.1항의 목적상 금융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헛징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a) 여하한 투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b) 헛징 대상 투자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위험 가능성을 제한, 상쇄 또는 제거하는 것을 유일한 목

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 (c) 반드시 동일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동일한 자산 클래스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헛징 대상인 투자자산과는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 (d) 통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헛징 대상 투자자산과는 높은 음의(negative) 상관관계를 취하는 가격 변동을 보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 경비 및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불리한 또는 극심한 시장 환경에서 헛징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헛징 약정을 조정하거나 다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2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금융파생상품과 관련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익스포저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50%를 초과하지 않게끔 정한 한도(단, 해당 한도는 SFC 규정, SFC 핸드북, SFC가 수시로 발표하는 규정 및/또는 방침에 따라 SFC가 수시로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초과 가능)에 따라 또한 헛징 목적 외("투자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본 A의 제3.1항에 따라 헛징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파생상품은 해당 헛징 약정에서 발생한 잔여 파생상품 익스포저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본 제3.2항에 명시된 50%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순익스포저는 SFC 규정 및 SFC가 발표하고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및 방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3.3 본 A의 제3.2항 및 본 제3.2항을 전제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융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 투자자산과 합산하여 본 A의 제1(a), (b), (c), (f), (g)(i) 및 (ii), 제1(g)항의 단서조항 (A) 부터 (C) 및 제2(b)항에 명시된 해당 기초 자산 및 투자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제한 또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4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금융파생상품은 주식거래소에 상장/가격 조회가 되거나 장외에서 거래되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a) 기초자산은 회사에 대한 주식, 채무증권, 단기금융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주식, 대규모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국채 및 기타 공채, 높은 유동성을 지닌 실물자산(금, 은, 백금 및 원유), 금융지수, 이자율, 환율, 외화 또는 SFC가 허용하며 투자목적 및 방침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타 자산 클래스
- (b) 장외 금융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이나 그 보증인은 대규모 금융기관이거나 SFC가 허용한 기타 기관이여야 합니다.
- (c) 본 A의 제1(a), (b)항을 전제로, 장외 금융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단일 기관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거래상대방 순익스포저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장외 금융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는 (해당되는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수령한 담보로 인해 낮아질 수 있으며 담보의 가치 및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장외 금융파생상품의 양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d) 해당 금융파생상품의 가치는 일일 시가로 평가되며 해당 금융파생상품의 발행인과 무관한 평가 대리기관, 집합투자업자나 수탁회사 또는 (상황에 따라) 그들의 명의대리인(들), 대리인(들) 또는 위탁기관(들)에서 평가 위원회 설립 또는 제3자와의 업무 계약을 통해 수행한 정기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검증가능한 평가를 전제로 합니다. 어느 때라도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주도하는 반대 거래로 인해 공정가치로 금융파생상품이 매각, 유동화 또는 거래종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정 대리인이나 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독립적인 시가 평가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금융파생상품의 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필요 자원들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3.5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헷징 또는 투자 목적을 불문하고) 상시 금융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금을 지불하고 채무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험관리절차의 일환으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금융파생상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적절히 상환되는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제3.5항의 목적상,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지급금을 지불하고 채무를 충당하는 데 활용되는 자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취특권 및 담보권 설정도 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증권 관련 미지급 금액에 대한 장래 지급청구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제외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6 본 A의 제3.5항을 전제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장래 채무 또는 우발 채무를 발생시키는 금융파생상품 거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재량으로 현금 결제 예정이거나 현금 결제가 가능한 금융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시 단기간 내 지불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동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b) 거래상대방의 재량에 따라, 대량으로 기초 자산의 실물 거래가 요구될 예정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금융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시 채무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양의 기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유동성이 있거나 거래가능한 기초자산이라고 판단한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충분한 양의 기타 대체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산은 언제라도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기초 자산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또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미래의 채무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대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리함에 있어 대체자산에 대한 평가 절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3.7 본 A의 제3.1항에서 제3.6항까지의 요건은 내재 금융파생상품에 적용됩니다. 투자설명서의 목적상 “내재 금융파생상품”은 다른 증권에 포함된 금융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A.4. 증권금융 거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현재 증권금융 거래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증권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1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증권금융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은 적절히 경감되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권금융 거래의 거래상대방은 지속적으로 건전성 규정 및 감독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이여야 합니다.
- 4.2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증권금융 거래(들)에 대해 최소 100%의 담보를 제공받아 담보 설정을 하지 않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로 인한 위험 악스포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4.3 증권금융 거래 상황에서 제공 받은 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보수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제하고 난 후, 증권금융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 4.4 증권금융 거래의 조건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어느 때라도 (상황에 따라) 증권 또는 또는 해당 증권금융거래(들)에 대한 현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가 체결한 증권금융거래(들)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킨 경우에만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증권금융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A.5. 담보

본 A의 제3.4(c)항에 명시된 장외 금융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거래상대방 악스포저를 경감시키거나 담보 상계를 위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보유하거나 수령하지 않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현재증권대여 거래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따라서 본 A의 제4.2항에 명시된 담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기 사항에 변동이 일어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해당되는 경우)본 A의 제3.4(c)항 및 제4.2항에 명시된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악스포저를 제한하기 위해 담보를 수령한 경우, 해당 담보와 관련하여 아래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a) 유동성 - 해당 담보는 조기매각 가치에 가까운 유리한 가격에 재빨리 매각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동성 및 거래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담보는 통상 거래층이 두텁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투명한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 (b) 가치 - 해당 담보는 독립적인 가격결정 원천을 활용하여 일일 시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c) 신용도 - 해당 담보는 높은 신용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담보나 담보로 활용되는 자산의 발행인의 신용도가 담보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저하되는 경우 즉시 담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 (d) 평가절하(haircut) - 해당 담보는 적정한 평가절하 정책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e) 위험분산 - 해당 담보는 여하한 단일 기관 및/또는 동일 그룹 내 기관들에 집중된 익스포저를 피하기 위해 적절히 분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담보 발행인(들)에 대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익스포저는 본 A의 1(a), 1(b), 1(c), 1(f), 1(g)(i) 및 (ii)와 제1(g)항의 단서조항 (A)부터 (C)까지와 제2(b)항에 규정된 투자제한 및 한도를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f) 상관관계 - 해당 담보의 가치는 담보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나 발행인 또는 증권금융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중대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상 금융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나 발행인 또는 증권금융 거래상대방 또는 여하한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권은 담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g) 운영상의 위험 및 법적 위험 관리 - 집합투자업자는 적정한 담보 관리를 위해 적절한 체계, 운영 능력 및 법률을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h) 독립적인 수탁 - 해당 담보물은 수탁회사나 합법적으로 선임된 명의대리인, 대리인 또는 위탁인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 (i) 집행능력 - 해당 담보는 금융파생상품 발행이나 증권금융 거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자원 없이도 수탁회사의 접근 및 집행이 용이해야 합니다.
- (j) 담보의 재투자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계정으로 수령한 담보의 대투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i) 수령한 현금 담보는 단기 예금, SFC 규정 제8.2조에 따라 인가받거나 SFC의 이와 유사요건을 통상적으로 충족하여 규제받으며 SFC가 허용한 우량 단기현금상품에만 재투자할 수 있으며, SFC 규정 제7장에 명시된 해당 투자자산 또는 익스포저에 적용되는 관련 투자제한 또는 한도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상 단기현금상품은 통상 현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공채,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단기 어음 및 은행인수 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현금상품이 우량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 정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ii) 수령한 비현금성 담보는 매각, 재투자 또는 질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 (iii) 현금 담보의 재투자로 인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iv) 수령한 현금 담보로 추가적으로 증권금융 거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v) 수령한 현금담보가 다른 투자자산(들)에 재투자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산(들)로 증권금융 거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k) 해당 담보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l) 해당 담보는 통상 다음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i) 내재 금융파생상품이나 합성 상품에 의존하여 배당하는 구조화 상품; (ii) 특수목적기구, 특수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체가 발행하는 증권, (iii) 증권화 상품 또는 (iv) 비상장 집합투자증권

A.6. 차입 및 레버리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대 예상 레버리지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차입

6.1 결과적으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모든 차입 시점의 원금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순자산가치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차입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단, 어느 때라도 백투백 론(back-to-back loan)은 차입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금융파생상품 활용에 따른 레버리지

6.2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레버리지 할 수 있으며 금융파생상품 활용에 따라 예상되는 최대 레버리지 수준(예: 예상되는 파생상품 순익스포저 최대치)는 투자설명서의 “금융파생상품 활용” 부

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3 파생상품 순익스포저를 산정할 때,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점진적인 레버리지를 창출할 파생상품은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내 동일한 포지션으로 전환됩니다. 파생상품 순익스포저는 SFC가 수시로 갱신하는 요건 및 안내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6.4 시장 및/또는 투자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제 레버리지 수준은 기대 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7.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상호

7.1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상호에 특정 목적, 투자 전략, 지리적 구역 또는 시장이 포함된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통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최소 그 순자산가치의 70%를 본 펀드가 표기된 특정 목적, 투자 전략, 지리적 구역 또는 시장이 반영된 증권 및 기타 투자자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주1)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투자한도 없이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혹은 투자등급이 없는 채권과 채무성 증권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방침상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혹은 투자등급이 없는 채권에 대한 동일 발행인 익스포저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추가 투자제한

대한민국에서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모집과 관련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추가적인 투자제한을 준수합니다.

- (1)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총발행금액의 10% 이상은 한국외에서 판매될 것
- (2) 순자산의 70% 이상이 외화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 포함), 외국부동산, 외국상품에 투자 운용될 것
- (3)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헛지 이외의 목적인지 여부 및 헛지 이외의 목적인 경우 관련 투자위험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외국자산운용사는 파생상품 투자에 필요한 위험관리 절차를 구축·운용할 것
- (4) 장외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되고 언제라도 공정가치로 청산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은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일 것
- (5)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입을 하지 않을 것. 단, 환매대금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 순자산의 10%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예외
- (6) 동일인과의 총 거래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동일인과의 거래에 장외파생상품이 포함되는 경우 한도는 20%로 함)
- (7) 동일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않을 것. 다만, 이는 동일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당해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발행된 예탁증서 포함)의 총시장가치 비율이 10%를 초과하나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가 증권의 총시장가치 비율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8)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동일 회사의 기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 (9)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될 것
- (10)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거래상대방의 부도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1)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
- (12)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법 § 229 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
- (13)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출(콜론 제외)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하지 않을 것

- (14) 집합투자재산으로 공매도(대주거래)를 하지 않을 것
 (15) 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회사, 동 회사의 임원, 주요주주(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그 배우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재산과의 사이에서 자기를 위하여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6) 투자자의 환매신청후 15일 이내에 환매가 이루어질 것.

주) 상기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주요 투자전략 등은 참조를 위한 투자 예시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수시로 조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펀드의 운용, 자산배분 및 성과와 변동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상기한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기재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disclosures/other-fund-info/>)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내용중 일부가 발췌된 것이며, 최근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③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구분	홍콩	싱가폴	중국	호주	태국
GDP(명목,10억달러)	359	466	17,963	1,776	495
GDP성장률(YoY,%)	-3.5	3.6	3	3	2.6
민간소비	-1.2	9.7	2	5.1	6.3
고정자산투자	-7.7	1.6	3.4	1.9	2.3
정부지출	8.2	-2.3	1.9	1.7	0
순수출성장기여도(%p)	-1.4	0.6	0.4	-0.8	1.7
물가상승(CPI,YoY)	1.9	6.1	2.0	6.6	6.1
기준금리(%)	4.8	NA	3.7	3.1	1.3
국가신용등급(S&P)	AA+	AAA	A+	AAA	BBB+
GDP대비공공부채	4.3	158.2	77.1	50.1	60.5
경상수지(bnUSD)	36.6	89.7	401.9	18.3	-15.7
경상수지(GDP대비)	10.2	18.0	2.3	1.1	-3.2
외환보유고(bnUSD)	423.9	279.8	3,127.7	38.5	195.6
대미환율	7.8	1.4	6.7	1.4	35.0
시가총액(bnUSD)	5,223	416	10,138	1,610	586
PER(배)	14.2	13.0	10.5	13.7	18.0
EPS성장률(%)	-3.6	2.1	-10.5	22.8	8.4

주1) 출처: UN [GDP, GDP Growth], Thomson reuters [물가상승률, Public Debt, 경상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대미환율, 기준금리 및 국가신용등급, 주식시장 시가총액, PER 및 EPS 성장률]

주2) 기준일: 2022년 12월 말

(3) 참조지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조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 지수의 등장 및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참조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조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의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10%

※ 상기 참조지수는 중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되 일본 비중을 제외하여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사가 발표하는 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아시아 지역 회사채를 중심으로 하여 제이피모건(J.P. Morgan)이 발표하는 지수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와 콜금리 10%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지수입니다.

※ 상기 참조지수는 단순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재산내 유동성 및 환해지에 의한 성과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운용은 본 참조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참조지수의 성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4)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해지 방법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해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해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설정 초기 등 일정기간 설정액이 환해지 거래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 환해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해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③ 환해지의 장단점

환해지는 외화자산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해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④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해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해지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해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거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을 환율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해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해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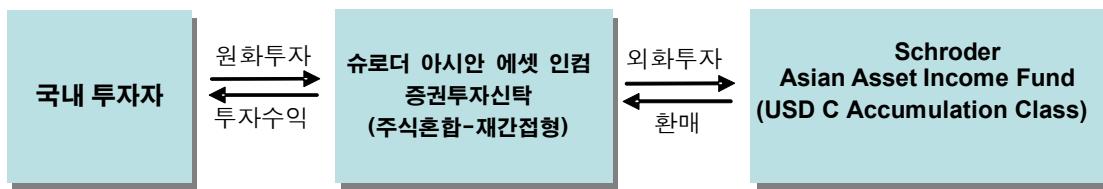
⑤ 환헤지 비용(단위: %, 원)

목표 해지비율	기준일(2024.06.30) 현재 환헤지 비율	(2023.07.01 ~ 2024.06.30) 환헤지 비용
100	99.32	1,005,000

주1) 환헤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접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해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계연도 : 2023.07.01 ~ 2024.06.30\]](#)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일 이후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USD C Accumulation Class)」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등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시 인지해야 할 이 집합투자기구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재하고 있으나, 향후 운용과정등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포함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상세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disclosures/other-fund-info/>)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
자산배분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주식, 아시아 채권, 현금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여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써, 자산배분에 대한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아시아 주식 및 아시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상당한 위험성(증권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포함)을 가지는 투자 전략과 기법을 활용하여 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증권을 거래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증권의 가격 변동, 금리, 환율등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내외 경제변수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경우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이 더 심하므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대상국가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 국제 경제전망, 금리변동, 환율변동등 해외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변화, 채무불이행등 개별기업의 다양한 고유위험으로 인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환매하지 않더라도 채권투자의 경우 발행자 신용상태의 변화 및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화하여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하이일드 채권등을 편입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의 경우 높은 신용위험과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 부실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행자등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태 악화,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환매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p>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u>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서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 할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가 등록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배상액은 월괄 회수되어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오류 발생 시기와 배상 시기상의 차이, 그에 따른 적용환율의 차이, 해당 기간동안의 운용역 재량에 따른 일상적인 운용행위 결과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내·외 변수의 영향으로 피투자펀드의 기준가 오류에 따른 투자자의 실제 손실액과 배상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손실을 부담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u></p>
환율 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 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해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해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해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p> <p>환해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p>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p>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 투자위험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및 투자 목적으로 옵션, 선물 및 선도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펀드가 수령하는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지만, 펀드는 그 금액을 초과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경우 펀드는 현금으로 옵션을 결제하거나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펀드 내 환해지를 위하여 일부 선물환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더 높은 거래상대방</p>

	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상된 지급금 또는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실현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 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등의 악화에 따라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해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발행인이 채무를 불이행 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신탁재산을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채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p>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p> <p>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및 IGA에 따라 투자자가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과 같은 특정인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p> <p>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的 정의가 다른 법령에 비해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p>
<p>후강통 및 선강통을 통한 중국A주 투자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및 선강통(Shenzhen-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은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 간 주식 교차거래를 목적으로 SEHK(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HKSCC(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또는 선전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와 ChinaClear(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가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은 상하이증권거래소나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 주식을 홍콩 소재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습니다.</p> <p>중국의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는 QFI 제도에 추가하여 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과 선강통(Shenzhen-HongKong Stock Connect)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수반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위험: 관련 규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해당 하위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요하는데, 그 국경간 거래 성격으로 인하여 운영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홍콩 및 상하이/선전 시장 양쪽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산 및 결제 위험: HKSCC와 ChinaClear는 청산 연결망을 구축하였으며 국경간 거래에서의 청산과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은 상대방에 대한 참가자가 됩니다. 어느 한 쪽의 시장에서 발생한 국경간 거래에 관하여, 해당 시장의 결제기관은 한쪽으로는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과 거래를 청산 및 결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상대방 결제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의 청산 및 결제를 완성할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법적 소유권/실제 소유권: 증권이 외국에서 보관될 경우, 현지 증권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aries), HKSCC 및 ChinaClear가 부과하는 의무 요건과 관련된 특정 법적 소유권/실질 소유권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머징 시장이나 저개발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권에 관한 법적/공식적 소유권과 실질소유권 기타 이해관계에 대한 법제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또한 HKSCC는 명의대리인으로서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실질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유권을 집행하거나 혹은 소유권과 관련된 기타 권리를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의 장부상 주주(registered holder)인 명의대리인이나 보관기관이 해당 증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이 해당 명의대리인이나 보관기관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자산풀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혹은 실질소유자가 동 증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와 보관회사는 이러한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HKSCC를 통하여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HKSCC가 보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투자자들은 펀드 및 그 보관회사가 HKSCC와 어떠한 법률 관계도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HKSCC의 이행이나 도산으로부터 펀드가 손실을 입을 경우 HKSCC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ChinaClear의 불이행 발생 시, HKSCC의 의무는 청산 참가자들과 체결한 시장계약에 따라 청산 참가자들의 청구를 지원하는데 국한됩니다. HKSCC는 선의로 가능한 법적 통로를 통해 또는 ChinaClear의 청산을 통해 ChinaClear로부터 미상환 주식과 현금을 회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펀드는 손실 전액을 회복할 수 없거나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수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험: HKSCC는 홍콩 시장 참가자들이 체결한 거래와 관련한 청산, 결제, 명의대리인 기능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일부 매매 제한을 포함한 중국의 규제는 이러한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식의 매각 시 투자종개업자에게 주식을 사전 교부해야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하여 펀드는 적시에 중국 A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쿼터 제한: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을 통한 교차거래 시스템은 쿼터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펀드가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을 통해 적시에 중국 A주식에 투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상: 펀드는 현지 투자자 보상 제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은 중국과 홍콩 시장이 거래를 위하여 개장한 날로서 양쪽 시장에서 은행이 해당 결제일에 개점한 날에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의 일상적인 거래일에 펀드가 중국 A주식의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강통과 선강통(Stock Connect)에서 위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동안 펀드는 중국 A주식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p>투자위험: 선강통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소형주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형주 투자에 따른 위험이 수반됩니다.</p>
중국 시장 투자위험 및 중국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관련 위험	투자자는 중국시장에 특정된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 본토의 정치, 사회, 경제 정책 변경이 중국시장에 투자한 펀드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및 법률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발달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중국의 회계기준과 관행은 국제회계기준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증권의 결제와 결제청산 제도는 아직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아 더 큰 오류나 비효율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p>또한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의 과세 제도 변경이 투자원금의 회수와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p> <p>특히 중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침은 종래로부터 명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거주 법인이 발행한 A 주식과 B 주식을 외국 법인 주주가 양도할 경우에는 10% 자본소득 원천징수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현재까지 징수된 바 없으며, 그 징수 시기, 소급 적용 여부와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 후 중국 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및 기타 자분 투자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본소득 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제의 일몰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이후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변동사유가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과세준비금을 위한 적립은 하지 아니합니다. 향후 이 투자신탁(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관행의 변화 징후나 중국 과세당국의 추가 지침의 발표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그 자문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중국 정부의 과세방침 발표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p> <p>후강통(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및 선강통(Shenzhen 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외국 투자자(본 펀드 포함)가 실현한 중국 A 주식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중국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사업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외국 투자자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과 유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세를 해당 상장기업을 통해 관할 중국 과세당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관할지의 조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해당 조세조약에서 더 낮은 배당소득세율을 정하고 있을 경우 과다 납부된 중국 원천징수 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과세당국에 그 차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중국 – 이윤 송금 및 유동성 위험	현재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역내 증권에 투자한 수익을 중국 밖으로 송금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윤 송금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칙과 제한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과 환매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이 투자신탁의 운영이 교란되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산 보관등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이 투자신탁은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투자신탁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 위험

- 본 수익권의 가격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산의 시가를 기반으로 하며, 본 수익권의 수익뿐만 아니라 본 수익권의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과거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자금을 맡길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투자자산과 현금 익스포져에 수반하는 위험(특히, 시장위험, 금리위험, 통화위험, 환율위험, 경제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외화증권 위험 및 정치위험을 포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 투자목적은 목표 성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은 시장 상황과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달성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인 암묵적인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은 은행계좌로 예금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며, 어떠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은행 예금자보호를 제공하는 보장기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각각의 증권과 시장은 그의 성격에 따라 독특하거나 일반적일 수 있는 특정 위험들을 수반합니다. 서로 다른 증권과 시장에 수반되는 위험들이 상호 관련이 없다거나 비의존적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분산요건이 위험을 제거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나. 특별 위험

시장위험

- 투자자들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의 가격과 그러한 증권으로부터 얻은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당한 위험성(증권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포함)을 가지는 투자 전략과 기법을 활용하여 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증권을 거래합니다. 투자자산의 가격은 변동적이며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예컨대, 여러 정부기관에 의한 조치 및 국내외 경제 개발과 정치 개선에 따른 조치 등)은 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더 나아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활동과 투자자산의 가치에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금리 변동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 투자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의 시가는 상승 및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이에는 투자심리,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발행인별 요인, 지역 또는 세계 경제 불안정, 환율 및 금리 변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거래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지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통화 및 환율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투자자산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와 다른 다양한 범주의 통화로 표시될 수 있으며, 수익권 클래스 역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는 해당 통화들과 기준통화 간 환율 변동과 환율 관리 변화로부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통화가 투자자의 본국 통화와 다른 경우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권 클래스의 통화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시장의 통화와 다른 경우, 투자자에게 통상적인 투자 위험보다 더 큰 추가적인 손실(또는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위안화 (“RMB”) 통화 위험

- RMB는 외화 바스켓에 연동하여 시장 수요공급에 기초하여 환율이 결정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통화 대비 RMB의 일일거래가격은 중국 본토가 고시하는 협소한 구간 안에서만 변동가능합니다.
- RMB는 현재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가 아니며 역외 RMB (CNH)에서 역내 RMB (CNY)로의 환전은 중국 본토 정부가 부과하는 외환관리방침과 제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RMB가 평가절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등급, 투자부적격등급(below investment grade) 및 미분류 등급 채무증권 관련 위험들

- “투자등급” 채무증권은 더 낮은 등급의 채권 및 어음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등급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채무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는 (i) 금리 변동, (ii)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증권 발행인의 신용도, (iii) 예상치 못한 조기상환, 및 (iv) 관련 채권시장의 하락세를 포함합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투자등급 증권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은 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상수익률(current yield)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은 더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금리변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발행인이 속한 산업에서의 불리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 시장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등급의 증권 시장보다 활발하지 않으며,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유자산 처분 능력은 부정적인 여론과 투자자들의 인식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추가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에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불리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채무증권이나 그 발행인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이나 이러한 증권과 관련한 발행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증권을 즉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추가적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위험

- 시장 금리 변동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는 금리가 인상되면 하락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상승합니다. 장기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은 일반적으로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며, 이에 따라 더 큰 시가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장기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을 보유한 경우, 더 짧은 뉴레이션을 가진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을 보유할 때보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는 더 큰 변동을 겪을 것입니다.

신용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발행인에 대한 신용위험을 수반합니다. 후순위 증권 및/또는 더 낮은 등급의 증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신용위험을 가지며 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더 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과 함께 간주됩니다.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권의 발행인이 재정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는 관련 증권의 가치(0일 가능성 포함)와 이러한 증권에 대한 지급금액(0일 가능성 포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상당히 누적된 채무변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국가들의 채무변제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신용위험을 가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기관에서 정한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이 갖는 의미는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으며, 언제나 증권 및/또는 발행인의 신용도(credit worthiness)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의 등급은 상당 부분 과거 실적에 기반하며 미래 상황의 가능성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부여된 시점과 등급이 갱신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등급 카테고리별로 증권의 신용위험 등급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현지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한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대다수의 인정받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채택한 기준 및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 체계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등급을 매긴 증권과 비교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RMB 표시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은 보통 담보 제공 없이 무담보로 모집되며, 관련 발행인의 다른 무담보 채무와 동순위에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발행인의 파산시 발행인 자산의 청산대금은 모든 담보부 채권이 전액 상환된 후에서야 해당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무담보 채권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지급불능(insolvency)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가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 투자의 가치평가는 불확실성과 단정적 결정을 수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치평가가 부정확하다고 판명될 시 이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관련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나 REIT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시장 위험에 더하여) 부동산 직접 소유에 수반되는 것과 유사한 위험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REIT의 가격은 REIT가 소유한 기초 재산의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기지 REIT의 가격은 담보재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기지 REIT가 제공한 대출금의 신용도 및 보유한 모기지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 REIT는 운용능력에 의존적이고 대체로 다각화될 수 없으며, 상당한 현금흐름 의존성, 차주의 채무불이행 및 청산(self-liquidation)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REIT가 보유한 모기지의 차주 또는 REIT가 소유한 재산의 임차인이 REIT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주나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시, REIT는 저당권자 혹은 임대자로서의 권한 행사에 지체를 겪을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위험에 더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특수목적” REIT는 호텔 REIT, 요양시설 REIT 또는 창고 REIT와 같은 특수한 부동산 부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부문에서의 불리한 상황들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반드시 SFC의 승인을 얻은 REIT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방침은 기초 REIT의 배당방침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TF 투자 관련 일반 위험

- ETF 수익권/주식의 거래가격은 설정 및 환매의 어려움(예컨대, 외국 정부에 의한 자본통제에 따른 어려움)과 ETF 수익권/주식의 유통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해당 ETF 수익권/주식의 순자산가치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ETF의 수수료 및 비용, 관련 트랙킹 인덱스 내에서 ETF 자산과 기초 증권간의 불완전한 상관관계, 주식가격의 반올림(rounding of share prices), 트랙킹 인덱스의 조정 및 규제 방침과 같은 요인들은 관련 ETF가 트랙킹 인덱스와 근접한 상관관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ETF 운용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TF의 수익률은 트랙킹 인덱스의 수익률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ETF 수익권/주식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에서 ETF 수익권/주식을 위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형성된다거나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ETF 수익권/주식은 기준가격보다 크게 할인되거나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물상품 투자 관련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실물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실물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물시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실물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은 급격한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과 관련 위험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실물상품 가격은 실물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수요공급은 소비 패턴, 거시경제적 요인, 기후 환경, 자연재해, 정부의 무역, 재무, 통화 및 외환 정책과 통제, 그리고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들(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 이에 더하여, 실물상품의 지리적 분포와 집중도로 인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고조된 정치적 위험 및 국가 개입과 산출물에 대한 주권분쟁(sovereign claims to outputs)이나 전쟁 행위, 해당 자원에 대한 소작료 및 세금 인상과 같은 문제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산업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이나 지속적인 소비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래상대방, 보관회사 및 결제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과 결제 불이행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머징마켓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머징마켓의 결제 체계/장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덜 선진화되고 신뢰성이 낮습니다. 이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을 증가시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이머징마켓 투자자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보관 및/또는 결제시스템이 완전히 선진화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보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어 하위보관회사들에 예탁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보관회사가 당해 하위보관회사에게 예탁된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현금계정은 대개 보관회사의 기록으로 보관될 것이지만 잔액은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위보관회사의 청산, 파산 또는 도산시, 관련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자산을 회수하는 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령의 소급적용 및 사기 또는 소유권의 부실 등록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자산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가 해당 시장에서 투자하고 투자자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체계적 증권시장에서보다 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옵션, 선물, 계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타 금융파생상품들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거래하는 이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도산,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그러할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이나 투자자산이 상장되거나 등급이 매겨지거나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변동성이 높거나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의 가격은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투자자산에서 보유자산의 축적 및 처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불리한 가격으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제한적인 유동성을 불러오는 불리한 시장 상황 때문에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투자상품의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스프레드가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한 거래비용을 발생할 수 있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러한 투자상품을 매각할 때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대량환매 신청을 받는 경우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히 할인하여 투자자산을 처분하여야 할 때 발생하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은 특정 파생상품이 매입 또는 매각되기 어려울 때에도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특히 크다든지 관련 시장이 비유동적(사적으로 협상되는 다수의 파생상품과 같은 경우)인 경우, 해당 파생상품을 유리한 시점이나 가격으로 매매를 이행한다든지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파생상품 관련 위험

- 금융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에는 거래상대방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가치평가 위험, 변동성 위험, 장외거래 위험 및 헛징 위험이 포함됩니다.
- 금융파생상품은 하나 이상의 기초 증권, 금융 벤치마크 혹은 인덱스와 연결되는 가치를 지닌 투자상품과 계약을 포함합니다. 투자는 특정 증권, 금융 벤치마크 혹은 인덱스의 가격 변동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많은 위험이 파생상품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위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파생상품은 계약이 체결될 때 지금 현금이나 예탁 현금보다 상당히 더 큰 시장 익스포저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불리한 시장 움직임에도 전체 투자자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에 수반되는 기타 위험에는 (a) 금리, 환율, 증권가격의 정확한 방향 예측과 관련한 집합투자업자에 의 의존, (b) 헛지 목적으로 활용된 파생상품의 성과와 헛지된 증권의 성과 간 불완전한 상관관계, (c)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술이 포트폴리오 증권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전술과 다르다는 사실, (d) 특정 파생상품을 위한 유동성 있는 유통시장의 부재 가능성, (e) 거래상대방의 파생상품계약 불이행, (f) 파생상품의 가격평가 오류 혹은 부정확한 가격평가 위험, (g) 파생상품이 가지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높은 수익 변동성 위험 등이 있습니다. 금융파생상품의 레버리지 요소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스포저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실흡수 특성을 가진 채무상품 투자와 관련된 위험

- 전통적인 채무상품과 비교했을 때 보통 미리 정한 예정사유 발생(예: 발행인이 도산 시점에 가까워지거나 발행인의 자본비율이 특정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에 따라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될 위험에 노출된 상품처럼

손실흡수 특성을 가진 채무상품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예정사유는 예측하기 복잡하고 어려우며,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감소 또는 전반적인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예정사유 발생 시, 잠재적인 가격 전염 및 전체 자산클래스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흡수 특성을 가진 채무상품은 또한 유동성, 가치평가, 섹터 집중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흔히 코코본드(CoCo)라고 알려진 매우 복잡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조건부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정사유 발생 시, 코코본드는 (경우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인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영구적으로 0으로 상각될 수 있습니다. 코코본드에 대한 이표지급은 재량에 따르며 발행인은 특정 시점에 특정 사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 비우선 채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후순위 채무보다 선순위이나, 촉발사유(trigger event) 발생 시 상각될 수 있으며 더 이상 발행인의 채권자 순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에 대한 위험

-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서(instrument)는 소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증서(instrument) 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서(instrument)는 보다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증서(instrument) 보다 유동성이 부족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딜러 이윤(dealer mark-up)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위험

- 본 수익권의 상당 부분을 환매(불리한 경제 혹은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큼)하게 되면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적은 자산기준량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을 바람직한 기간보다 더 빨리 청산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매되는 수익권 및 잔여 수익권 모두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약관에 명시된 특정 상황의 경우 본 수익권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는 중지되며 이에 영향을 받는 환매신청과 환매대금의 지급도 연기됩니다. 본 수익권이 환매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본 수익권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은 환매를 신청한 수익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의 의견으로 어느 수익자가 보유한 본 수익권이 어느 국가, 정부 당국 또는 증권거래소의 법률이나 요건을 위반하게 되거나 신탁약관에 명시된 기타 유사 상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적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미국인 또는 FACTA에서 정하는 미국인이 수익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가 인지하게 될 경우, 관계법령 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는 해당 수익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는 선의로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행위합니다. 이러한 강제 환매는 환매 시점에 따라 수익자에게 불리한 과세 및/또는 경제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도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해지, 강제 환매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부분을 변상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조기 해지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자산에서 수익자들이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는 짜를 해당 수익자에게 분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또는 분배시점 당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특정 투자자산이 동 투자자산의 취득원가보다 더 작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으며, 이는 수익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완전히 상각되지 않은 본 수익권과 관련한 설립비용은 당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머징마켓 및 개발도상국 시장 증권 위험

- 이머징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정부, 덜 다각화된 산업기반을 토대로 하는 경제, 적은 수의 증권들이 거래되는 증권 시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머징마켓의 회사들은 선진 시장의 다수의 회사들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작으며 경험이 부족하고 최근에 설립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머징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더하여, 외국 투자자들은 이머징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투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무엇보다도 투자 이행이나 수익 또는 자본 송금에 앞선 정부 차원의 승인을 요구하게 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증권의 금액이나 유형 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이머징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율, 통화절하, 자본 재투자, 자원 자족률 및 국제수지 균형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제와는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하게 덜 다각화된 산업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 상당히 의존적이며, 이에 따라 무역장벽, 외국환 관리, 상대적 통화가치의 관리 조정 및 무역 대상국들과 협의되거나 이들로부터 부과된 기타 보호무역정책들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정은 무역 대상국들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도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려할 수 있습니다.
- 이머징마켓 증권의 위험들로는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더욱 현저한 정부의 경제 개입, 상대적으로 약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정, 통화 헛징 기법의 이용 불가능성, 새로 설립된 소규모 회사들,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의 차이(이는 발행인들에 관한 중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덜 선진화된 법률 체계를 포함합니다. 이에 더하여, 비거주자들이 수령한 이자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머징시장 및 개발도상국 시장마다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 법률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못하게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과세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활동을 이행하거나 자산을 평가할 때만해도 예상치 못했던 현지 조세 의무를 향후 부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 관련 위험

-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는 투자한도 제한 (quota limitations)이 적용됩니다.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를 통한 거래가 중단될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적시에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를 통해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에 접근할 수 있는 (이에 따라 투자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불리한 영향을 입게 됩니다.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 규정은 특정 매매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중국 A 주식을 적시에 처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 후강통 및 선강통 주식 교차거래 제도를 통해 거래 가능한 적격 종목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편입종목이나 전략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집합투자업자가 적격 종목에서 취소된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할 경우). 거래일의 차이로 인하여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본토 시장은 거래를 위해 개장하였으나 홍콩 시장이 폐장한 날 중국 A 주식의 가격 변동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후강통에 투자함으로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중국 본토 원천징수세("중국 본토 원천징수세") 및 중국 본토에서 부과되는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세법과 규정, 관행은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으며, 변경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hina Interbank Bond Market) 관련 위험

-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에서 특정 채무증권의 거래량 저조로 인한 시장변동성 및 유동성 부족 가능성으로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채무증권이 상당한 가격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해당 증권의 가격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당한 거래 및 실현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투자자산의 매도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CIBM에서 거래하는 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결제 절차 및 거래상대방 불이행과 관련한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와 거래를 체결한 거래상대방은 관련 증권의 교부나 가격 지불에 의하여 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통을 통한 투자의 경우 관련 신고, 중국 인민은행에의 등록 및 계좌 개설은 해외 보관대리인, 등록대리인 또는 기타 제삼자(경우에 따라)를 통하여 수행됩니다. 이와 같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제삼자 측의 불이행 또는 착오 위험에 노출됩니다.
- 채권통을 통한 CIBM에의 투자에는 규제 위험도 있습니다. 이 체제하에서의 관련 규칙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 당국이 계좌개설이나 CIBM에서의 거래를 중지하는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CIBM에의 투자능력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권통을 통한 거래는 신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및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거나 시장에서의 변화 및 상황 진척에 계속해서 적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통을 통한 거래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권통을 통한 투자 능력(및 그에 따른 투자전략 추진 능력)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IBM에 투자함으로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중국 본토 원천징수세 및 중국 본토에서 부과되는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세법과 규정, 관행은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으며, 변경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관련 위험

-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18일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해외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운용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수익권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지급한 미국원천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포함)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에 따라 행위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 과징금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하지만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달성하거나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수익자들이 보유한 수익권의 가치는 불리한 영향을 입게 될 수 있으며 수익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상 요건과 관련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투자중개업자, 명의대리인 또는 보관회사를 통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소유한 투자자의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자, 명의대리인 또는 보관회사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영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간 자산 및 채무 분리

- 본 펀드의 모든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은 신탁약관과 그의 보충본에 따라 독립적인 개별 신탁으로 설립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간에 서로 효율적으로 분리되며, 어떠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도 다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나 그에 대한 청구를 부담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관할법원(홍콩 제외)의 판결이 있는 경우,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자의 자산이 다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나 청구를 부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잠재적인 채

권자들에게 특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 대해서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기타 모든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에 전제적으로 또는 수탁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는 조언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문서에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포함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클래스간 채무(Cross-Class Liability)

- 특정 클래스의 부채가 동 클래스의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클래스에 대한 채권자는 다른 클래스에 귀속된 자산들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회계 목적상 각 클래스에 대해 독립적인 계정이 개설됨에도 불구하고,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파산이나 해지시(즉,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으로 그의 채무를 감당하기 불충분한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개별 클래스의 자산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또 다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반드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본인의 자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투자 위험

-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신속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신속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disclosures/other-fund-info/>)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내용중 일부가 발췌된 것이며, 최근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97.5% 신뢰수준 VaR) 측정을 통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은 전체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 경제등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채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특히 하이일드채권등의 변동성등에 따른 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이해하며, 이러한 투자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펀드 명칭	위험등급 산정기준	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 (97.5% 신뢰수준 VaR)	투자위험 등급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동성	15.18%	4

주1)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위험등급은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수반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은 위험등급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판매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채택한 위험등급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기준/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낮은위험)
97.5% 신뢰수준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신뢰수준 97.5% VaR값 45%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45%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 사유
2023.07.18(*)	3등급 → 4등급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변동성이 5%초과 10% 이하(8.32%)
2021.02.18(*)	4등급 → 3등급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변동성이 10%초과 15% 이하(10.33%)
2016.07.02(*)	1등급 → 4등급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5단계 → 6단계 적용)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변동성 기준 적용

주1) 위험등급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위험등급 기준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 : 동 기간의 위험등급의 산출 기준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변동성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2024년 결산기 이후로 97.5% 신뢰수준의 VaR 적용

투자대상자산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미경과 펀드)

등급	신규 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6)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제 1 영업일(D)	제 3 영업일(D+2)	제 4 영업일(D+3)
17 시(오후 5 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이후 개정본 포함)(“미투자회사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후 개정본 포함)(“미증권법”)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한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증권은 미증권법, 해당주의 주법 및 기타 증권법률에 의해서만 모집되거나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미국인은 미증권법에 의한 Regulation S에서 정의된 자를 의미합니다.

(5)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 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및 IGA에 따라 투자가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과 같은 특정인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的 정의가 다른 법령에 비해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별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지급

구분	제 1 영업일	제 4 영업일(D+3)	제 5 영업일(D+4)	제 8 영업일(D+7)	제 9 영업일(D+8)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없음

<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가능 여부	중도환매시 비용(환매수수료) 발생여부
가능	없음

주1)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 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 연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⑤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7영업일 전일(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 연기 이후, 환매연기기간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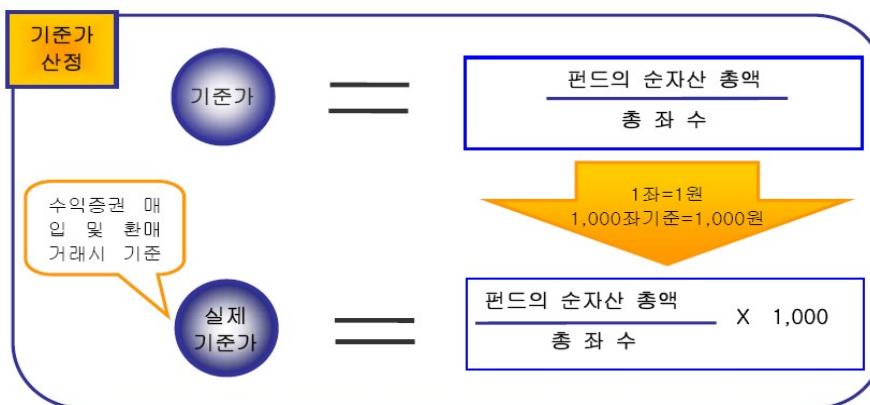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개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투자신탁 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개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채무증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상장주식	외화표시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외화표시비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장외시장의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로 평가, 다만,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가 형성되지 않거나 최종거래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 평가기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동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어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최초 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2.9.7	제한없음	주1) 납입금액의 1.0%이내(선취)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선취 판매수수료 부과)	주1) 납입금액의 0.60%이내(선취)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2.9.7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주1) 납입금액의 0.5%이내(선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2.9.7	제한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2.9.7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펀드(I)	미설정	5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미설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9호,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5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미설정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4.24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함	^{주1)}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후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2015.9.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고객에 한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CP)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14.8.1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함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16.10.18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고객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CP)	2016.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CPe)	2017.12.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부과기준				A, A-g, A-e: 매입시 S: 3년미만 환매시

주1) 종류A, A-g, A-e의 선취판매수수료율, 종류S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된 수수료율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신탁 종류별 설정여부는 작성기준일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지급비율: 연간, %)

구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총보수·비용포함)	증권거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10	0.70	0.04	0.02	0.86	0.0073	0.8673	1.6829	0.0167	0.97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자비용(A-g)	0.10	0.55	0.04	0.02	0.71	-	0.7100	1.5400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10	0.35	0.04	0.02	0.51	0.0050	0.5150	1.3306	0.0170	0.63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10	1.00	0.04	0.02	1.16	0.0072	1.1672	1.9829	0.0170	1.25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10	0.75	0.04	0.02	0.91	-	0.9100	1.7400	-	-

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10	0.50	0.04	0.02	0.66	<u>0.0068</u>	<u>0.6668</u>	<u>1.4825</u>	<u>0.0170</u>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펀드(I)	0.10	0.045	0.04	0.02	0.205	-	0.205	1.035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F)	0.10	0.05	0.04	0.02	0.21	-	0.21	1.04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W)	0.10	0.00	0.04	0.02	0.16	-	0.16	0.99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0.10	0.22	0.04	0.02	0.38	<u>0.0050</u>	<u>0.3850</u>	<u>1.2006</u>	<u>0.0170</u>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0.10	0.18	0.04	0.02	0.34	<u>0.0050</u>	<u>0.3450</u>	<u>1.1606</u>	<u>0.0170</u>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CP)	0.10	0.20	0.04	0.02	0.36	-	0.3600	1.19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0.10	0.99	0.04	0.02	1.15	<u>0.0050</u>	<u>0.3850</u>	<u>1.2006</u>	<u>0.0170</u>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C-Pe)	0.10	0.495	0.04	0.02	0.655	<u>0.0050</u>	<u>0.3450</u>	<u>1.1606</u>	<u>0.0170</u>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C-CP)(퇴직연금)	0.10	0.80	0.04	0.02	0.96	<u>0.0050</u>	<u>0.3850</u>	<u>1.2006</u>	<u>0.0170</u>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C-CPe)(퇴직연금)	0.10	0.40	0.04	0.02	0.56	<u>0.0050</u>	<u>0.3450</u>	<u>1.1606</u>	<u>0.0170</u>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7.01 ~ 2024.06.30]

주 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내역)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7.01 ~ 2024.06.30]

구분	구성 항목	금액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자산매매수수료(주식, 채권, 장내·외 파생, 해외수익증권 등), 종개수수료(콜, 대차 및 대차 관련, Repo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 상이))	<u>1,005</u>
금융비용	기타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항목 등(e.g.이자비용 등)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 0.83% 예상치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율을 의미합니다.

주 7) 합성기준일 현재 미설정되었거나 설정잔액이 없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과거추정치를 사용하였거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종류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70	446	628	1,009	2,0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216	378	545	896	1,884
	수수료선취-온라인(A-e)	185	325	471	777	1,6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3	412	627	1,076	2,3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178	362	552	950	2,0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51	308	470	812	1,7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펀드(I)	122	250	382	660	1,4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123	251	383	663	1,4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118	240	367	636	1,40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23	250	382	661	1,4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118	242	369	639	1,4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CP)	121	248	379	657	1,4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2	409	623	1,071	2,3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51	307	468	808	1,7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CP)	182	370	564	971	2,1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CPe)	141	288	439	759	1,664

주 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 0.83% 예상치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S의 경우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4)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되었거나 설정잔액이 없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과거추정치를 사용하였거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제반 세액 및 비용등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

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또는)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4월 1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boxed{\text{외국납부세액}} \times \boxed{*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할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S-P,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주택양도 후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 취득시 그 차액은 제외)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납입 가능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3.2%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연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외)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종류 S-CP(퇴직연금), C-CP(퇴직연금), C-CPe(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600만원과 합산)의 13.2%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이면: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5.5%~3.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가능하며,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종도 해지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2 기(2023.07.01 – 2024.06.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1 기(2022.07.01 – 2023.06.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0 기(2021.09.07 – 2022.06.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 법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항 목	재무상태표		
	제 11 기 (2024.06.30)	제 10 기 (2023.06.30)	제 9 기 (2022.06.30)
운용자산	5,505,197,203	7,207,292,311	8,479,461,006
증권	5,375,403,655	7,113,193,356	8,282,201,025
파생상품	-25,470,272	-90,122,052	-117,996,885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55,263,820	184,221,007	315,256,86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107,479	199,116	253,382
자산총계	5,510,304,682	7,207,491,427	8,479,714,38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239,401	43,319,279	51,577,472
부채총계	9,239,401	43,319,279	51,577,472
원본	4,516,927,461	6,466,762,251	7,191,930,430
수익조정금	-183,475,633	-71,624,924	-146,192,402
이익잉여금	1,167,613,453	769,034,821	1,382,398,888
자본총계	5,501,065,281	7,164,172,148	8,428,136,916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1 기 (2023.07.01 – 2024.06.30)	제 10 기 (2022.07.01 – 2023.06.30)	제 9 기 (2021.09.07 – 2022.06.30)
운용수익	493,527,528	-447,769,903	-1,100,342,439
이자수익	2,861,402	3,996,399	1,328,432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90,666,126	-451,766,302	-1,101,670,87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301,020	1,858,900	1,533,6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005,000	1,470,000	1,533,600
기타비용	296,020	388,900	354,940
당기순이익	492,226,508	-449,628,803	-1,102,230,979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3.07.01 – 2024.06.30)			당기(2022.07.01 – 2023.06.30)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22,186	1.0050	0.0045	32,242	1.4700	0.0046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 대차, 콜 등)	-	-	-	-	-	-
합계	22,186	1.0050	0.0045	32,242	1.4700	0.0046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투자신탁명 :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원]	
과 목	자 산	제12기(2024.06.30)		제11기(2023.06.30)		제10기(2022.06.3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0,945,652	155,263,820	147,776,483	184,221,007	257,188,698	315,256,866
2. 예치금						
3. 증거금	24,318,168		36,444,524			58,068,168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5,375,403,655		7,113,193,356		8,282,201,025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5,375,421,388		7,113,149,880		8,282,189,188	
4. 기타유가증권	-17,733		43,476		11,837	
파생상품						
1. 파생상품	-25,470,272	-25,470,272	-90,122,052		-117,996,885	-117,996,885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107,479		199,116		253,382
2. 정산미수금	4,900,000					
3. 미수이자	207,479		199,116			
4. 미수배당금					116,000	
5. 기타미수입금					137,382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5,510,304,682		7,207,491,427		8,479,714,388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9,239,401		43,319,279		51,577,472
2. 정산미지급금			720,000			
3. 해지미지급금			42,568,919			
4. 수수료미지급금	9,216,181	23,220	30,360		51,543,792	
5. 기타미지급금					33,68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9,239,401		43,319,279		51,577,472
자 본						
1. 원 본	4,516,927,461		6,466,762,251		7,191,930,43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984,137,820		697,409,897		1,236,206,486	
(발행좌수 당기):	4,516,927,461	좌	1,167,613,453		769,034,821	1,382,398,888
전기:	6,466,762,251	좌	-183,475,633		-71,624,924	-146,192,402
전전기:	7,191,930,430	(좌)				
(기준가격 당기):	1,217.88	원				
전기:	1,107.85	원				
전전기:	1,171.89	원				
자 본 총 계		5,501,065,281		7,164,172,148		8,428,136,91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510,304,682		7,207,491,427		8,479,714,388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투자신탁명 :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원]		
과 목	제12기(2023.07.01-2024.06.30)		제11기(2022.07.01-2023.06.30)		제10기(2021.09.07-2022.06.3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 이자수익	2,861,402		3,996,399		1,328,432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 지분증권매매차익		1,768,667,357		2,280,624,21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15,366,000		829,576,000		462,530,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573,452,265					
5. 외환거래/평가차익	696,399,848		1,381,302,725		1,008,660,657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83,449,244		69,745,486		358,881,42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지분증권매매차손		1,279,006,231		2,733,860,51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474,267,000		891,263,000		647,652,60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310,565,199		1,365,645,709	
4. 지분증권평가차손			1,519,927,606		919,978,247	
5. 외환거래/평가차손	786,019,102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8,720,129		12,104,708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296,020		388,900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96,020		388,900		354,94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92,226,508		-449,628,803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08973746		-0.0695292		
					-0.15325940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65	72	7	8	27	29	45	55
2022.07.01 - 2023.06.30	72	84	19	21	26	30	65	72
2021.09.07 - 2022.06.30	78	103	19	24	25	32	72	84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27	28	0	0	14	14	13	15
2022.07.01 - 2023.06.30	31	34	1	1	4	5	27	28
2021.09.07 - 2022.06.30	44	55	1	1	14	17	31	34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1	1	0	0	1	1	1	1
2022.07.01 - 2023.06.30	3	3	1	1	3	3	1	1
2021.09.07 - 2022.06.30	2	3	2	2	1	1	3	3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10	10	1	1	2	2	9	10
2022.07.01 - 2023.06.30	11	12	1	1	2	2	10	10
2021.09.07 - 2022.06.30	13	17	2	2	4	4	11	12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5	6	1	1	2	2	4	4
2022.07.01 - 2023.06.30	5	6	2	2	2	2	5	6
2021.09.07 - 2022.06.30	6	7	1	2	2	2	5	6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1	1	0	0	0	0	1	1
2022.07.01 - 2023.06.30	1	1	0	0	0	0	1	1
2021.09.07 - 2022.06.30	1	1	0	0	0	0	1	1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1	1	0	0	0	0	1	1
2022.07.01 - 2023.06.30	1	1	0	0	0	0	1	1
2021.09.07 - 2022.06.30	1	1	0	0	0	0	1	1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2	2	0	0	0	0	2	2
2022.07.01 - 2023.06.30	2	2	0	0	0	0	2	2
2021.09.07 - 2022.06.30	2	2	0	0	0	0	2	2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1	1	0	0	0	0	1	1
2022.07.01 - 2023.06.30	1	1	0	0	0	0	1	1
2021.09.07 - 2022.06.30	1	1	0	0	0	0	1	1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CP(퇴직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7	7	1	1	2	2	6	6
2022.07.01 - 2023.06.30	9	9	1	1	3	3	7	7
2021.09.07 - 2022.06.30	9	10	1	1	1	2	9	9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CPe(퇴직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17	15	5	5	7	7	14	14
2022.07.01 - 2023.06.30	17	16	16	15	15	14	17	15
2021.09.07 - 2022.06.30	5	6	16	16	4	4	1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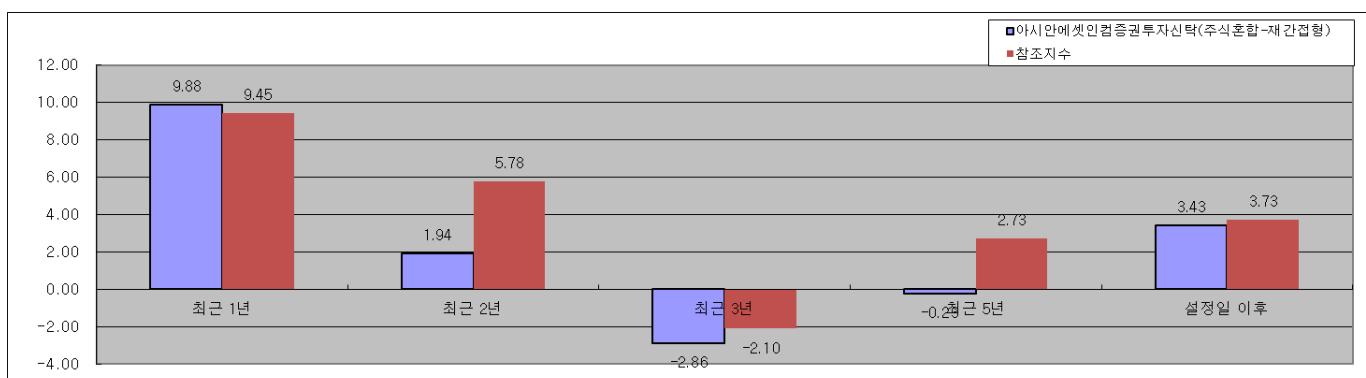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펀드	23.07.02 ~ 24.07.01	22.07.02 ~ 24.07.01	21.07.02 ~ 24.07.01	19.07.02 ~ 24.07.01	12.09.07 ~ 24.07.01
참조지수	9.88	1.94	-2.86	-0.23	3.43
수익률변동성	8.04	8.72	8.44	10.34	8.8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8.95	1.07	-3.69	-1.08	2.55
수수료선취-온라인(A-e)	9.33	1.42	-3.35	-0.73	2.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8.63	0.77	-3.98	-1.38	2.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17	1.27	-3.50	-0.88	2.7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9.47	1.55	-3.23	-0.61	2.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9.52	1.59	-3.19	-0.57	2.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8.64	0.78	-3.97	-1.36	1.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CP)	9.18	1.28	-3.49	-0.88	0.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8.84	0.97	-3.79	-1.18	0.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CPe)	9.27	1.37	-3.41	-0.79	0.02

주 1) 참조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10%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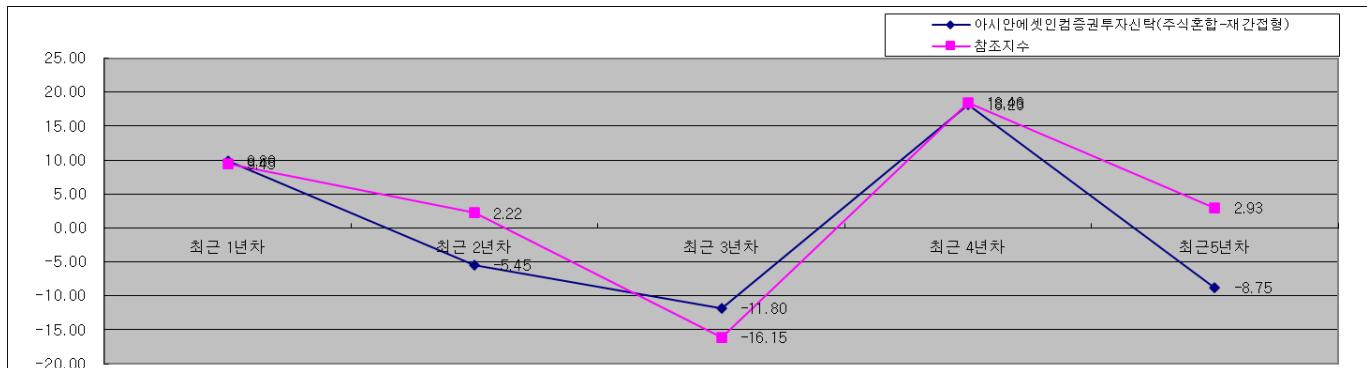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라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구분	최근 1년차 23.07.02 ~ 24.07.01	최근 2년차 22.07.02 ~ 23.07.01	최근 3년차 21.07.02 ~ 22.07.01	최근 4년차 20.07.02 ~ 21.07.01	최근 5년차 19.07.02 ~ 20.07.01
펀드	9.89	-5.45	-11.80	18.23	-8.75
참조지수	9.45	2.22	-16.15	18.46	2.9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8.95	-6.27	-12.57	17.24	-9.53
수수료선취-온라인(A-e)	9.34	-5.93	-12.26	17.64	-9.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8.63	-6.55	-12.83	16.90	-9.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17	-6.08	-12.39	17.47	-9.3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9.47	-5.81	-12.14	17.79	-9.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9.52	-5.77	-12.11	17.84	-9.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u>8.64</u>	<u>-6.54</u>	<u>-12.82</u>	<u>16.91</u>	<u>-9.79</u>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u>9.18</u>	<u>-6.07</u>	<u>-12.38</u>	<u>17.48</u>	<u>-9.34</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CP)	<u>8.85</u>	<u>-6.36</u>	<u>-12.66</u>	<u>17.13</u>	<u>-9.62</u>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CPe)	<u>9.27</u>	<u>-5.98</u>	<u>-12.30</u>	<u>17.58</u>	<u>-9.26</u>

주1) 참조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10%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수치가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은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4.06.30 현재/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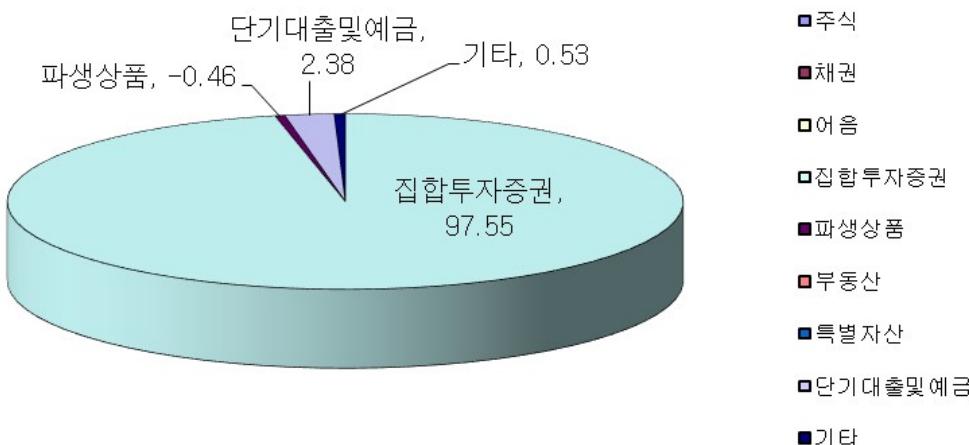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1	0	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1.47)	(18.53)	(3.00)
USD	0	0	0	54	0	0	0	0	0	0	0	54
	(0.00)	(0.00)	(0.00)	(100.43)	(0.00)	(-0.48)	(0.00)	(0.00)	(0.00)	(0.05)	(0.00)	(97.00)
합계	0	0	0	54	0	0	0	0	0	1	0	55
	(0.00)	(0.00)	(0.00)	(97.55)	(0.00)	(-0.46)	(0.00)	(0.00)	(0.00)	(2.38)	(0.53)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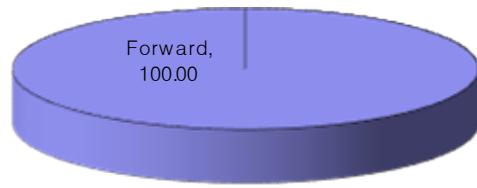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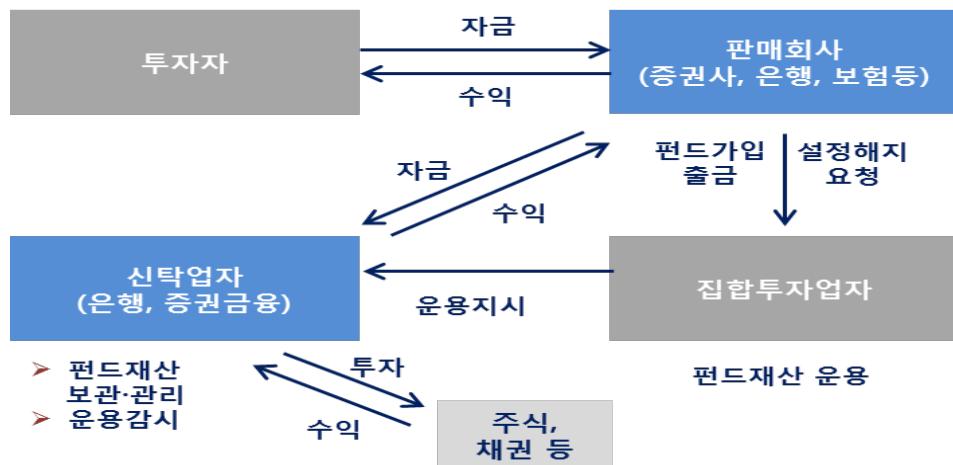
라.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 현황

[2024.06.30 현재 / 단위 : 억원, %]

자산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Forward	46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 층 (02-6390-5000, www.schroders.co.kr)
회사 연혁	1994.05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 개설 2001.05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100 억원) 2001.07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2001.09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개시
자본금	100 억 원
주요주주현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3. 12.31	'22. 12.31	항 목	'23. 12.31	'22. 12.31
현금 및 예치금	193	158	영업수익	149	1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5	6	영업비용	140	140
유. 무형자산	12	21	영업이익	9	8
기타자산	64	76	영업외수익	0	0
자산총계	274	261	영업외비용	0	0
기타부채	58	5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	8
부채총계	58	52	법인세	2	2
자본금	100	100	당기순이익	7	6
이익잉여금	116	109	기타포괄손익	0	0
자본총계	216	209	총포괄손익	7	6

라. 운용자산 규모 (2024년 6월 30일 기준 /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0	0	0	12,832	0	0	0	0	0	12,832

주1) 상기 운용자산규모는 순자산 총액 및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일입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주)
주 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 2가) 씨티뱅크센터(02-3455-2114)
회 사 연 협 등 (홈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A.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및 신탁계약서상에 명시된 신탁업자의 업무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C.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18, 19, 20층) (02-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시행령제217조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증권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5)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3)과 (4)에 해당되는 투자신탁에 대해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 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 ②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법 제 247 조 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 ③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⑤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⑥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⑦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⑧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 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 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⑪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증권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p>①선정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비용의 유리성 -매매체결의 신속성, 정확성과 효율성 -리서치, 시장정보 제공능력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능력 -증개회사의 재무상황과 경영 현황 등 발생 가능한 크레딧리스크 관리 <p>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 투자신탁과 관련되어 사용될 것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증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직접적인 현금 등 지급 바.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p>③선정방법</p> <p>운용역,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증개사와 업무적으로 연관된 담당자들이 매 분기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 선정 결과는 분기 중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며, 분기말 리뷰를 거침</p>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증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펀드(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권의 일종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펀드	수익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기간 중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로 펀드의 만기 시점(운용 종료 시점)에 투자금과 운용성과를 회수 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추가형 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 펀드	설정기간 이외에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펀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해당 펀드(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신탁계약서(규약 또는 약관)에서 정한 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종류형 펀드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멀티클래스 펀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 이자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신탁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재산을 운용(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판매회사보수) 및 관리(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펀드 가입 및 추가불입(납입)시 판매사에 지급하는 선취판매 수수료와 펀드 환매시점에 지불하는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신탁계약서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혹은 펀드 설정전에 정한 신탁계약종료 조건이 달성) 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펀드의 만기가 도달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 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12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	비교지수와 달리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하기 위한 지수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전략을 수행하거나 혹은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운용결과가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